

#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 .  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상위 법령인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리자의 책무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등 모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입법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관리자의 책무 신설(안 제4조)
- 나.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(안 제4조의2)
- 다. 기타 용어의 정비 등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다.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##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”를 “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,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.

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안전관리 시설의 설치)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각 호와 같으며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·관리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·관리자로 한다.

1. 시장이 설치·관리하는 개방화장실
2.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에 기록·관리해야 한다.

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한 공중화장실”을 “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”를 “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)”를 “(공중화장실 등의 유지·관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”을 “공중화장실 등을 설치·관리하는”으로, “공중화장실을 항상”을 “공중화장실 등을 항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“공중화장실”을 “화장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필요한 공중화장실의”를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관리대장의 비치)”를 “(관리카드의 비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”을 “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등 내에”로, “관리대장을”을 “관리카드를”로, “시설의 유지·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”을 “공중화장실 등의 유지·

관리 상황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공중화장실”을 “공중화장실 등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

전 경 사 진												
소 재 지				화장실 명칭								
지 역 구 분				설 치				관 리 책 임		소 속		
설 치 및 관 리 주 체		설 치 주 체		년 도				공 무 원		직 급		
		관 리 주 체								성 명		
관 리 인				(전화번호 : )				월평균 이용인원				
규 모		부 지 (㎡)	화장실 면적(㎡)	대변기 수			소변기 수		대변기 유형		사용료	
				남	여	장애인	성인용	유아용	동양식	서양식	유료	무료
편의시설 내역		세 면 시 설	난방 시 설	냉방 시 설	환풍기	화장지 (자 동 판매기)	비누	수 건 ( 에어타 올)	탈취제 (방향제)	청소도구함		기 타
										내부	외부	
시설관리 내역		년월일	관리사항	금 액 (천원)	년월일	관리사항	금 액 (천원)	년월일	관리사항	금 액 (천원)		
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		지정		비상벨			안심스크린			기타시설		
		여부		(설치수)			(설치수)					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
<p>제4조(설치·관리자의 책무) &lt;신설&gt;</p> <p>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4조(설치·관리자의 책무) ① <u>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,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제4조의2(안전관리 시설의 설치)</p> <p>① <u>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각 호와 같으며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·관리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</u></p>

제5조(설치기준) ①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4. (생략)
5.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

설치·관리자로 한다.

1. 시장이 설치·관리하는 개방 화장실

2.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에 기록·관리해야 한다.

제5조(설치기준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.

6. 범죄 및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내부에 ‘비상벨’ 및 ‘안심스크린’과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6조(위탁관리 등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·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7조(관리인의 교육)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(이하 “관리인”이라 한다)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9조(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) 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

<삭 제>

제6조(위탁관리 등)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관리인의 교육) ① -----  
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공중화장실 등의 유지·관리)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·관

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  
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 
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 
한다.

1.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 
한다. 다만, 공중화장실의 이  
용빈도와 현장여건 등에 따라  
청소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2. (생략)

3.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  
손·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  
하고,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  
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  
색을 하여야 한다.

제10조(관리대장의 비치) 공중화  
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별  
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 
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  
지·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 
기록하여야 한다.

제11조(화장실의 개방) ① 시장이  
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 
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 
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리하는 -----

---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---

-----

---

1. -----

---. --- 화장실-----

-----

-----.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

----- 필요한 -----

-----

-----.

제10조(관리카드의 비치) 공중화  
장실 등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 
등 내에 ----- 관리카드  
를 ----- 공중화장실  
등의 유지·관리 상황-----  
-----.

제11조(화장실의 개방) ① -----

----- 공중화장실 등-----

-----

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# 관계법령

## □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·이용,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 증진,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·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7조(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)

① ~ ③ 생략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.

⑤ ~ ⑦ 생략

#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재정수반요인

: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따른 세출 발생(안 제4조의2)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(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)

1.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

## 3. 미첨부 사유

: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

○ 비상벨 설치비 산정 : 총215,160,000원 , 장소:163개소

[1,320,000원(1개소당) × 163개소 = 215,160,000원]

가) 구매 및 현장설치비 : 1,320,000원/개소(물품번호:24613486)

나) 통신료 : 월 10,000원/개소

4. 작성자 : 환경관리과 수계수질팀 성태현(480-5287)

소 관 부 서		환경관리과
입 안 자	과 장	손 양 숙
	팀 장	김 상 미
	담 당 자	성 태 현 (480-5287)